

## 상위1% 소득비중 분석

2012.04.26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 목차

1. 상위1% 소득비중 16.6%?
2. 상위1% 소득비중 11.2%
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

새사연은 2006년에 설립된 진보적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를 인용하여 상위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인 16.6%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 주목을 받음.<sup>1)</sup>
-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위1%의 소득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
-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상위1% 소득비중은 OECD 평균 9.8%보다 훨씬 높고 미국 다음인 OECD 2위에 기록.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를 기초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5.2~5.7% 수준에 그침.
- 정교화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누락됨. 또한 초고소득자의 주요 소득원천인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초고소득층은 재산 및 임대소득 또한 실제보다 작게 보고함.
- 따라서 초고소득자와 그들의 소득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니계수 등 각종 양극화 지표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연유로 상위1%의 소득비중을 납세 자료로 포착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Piketty&Saez는 미국의 상위1% 소득비중의 추세를 1913년까지 추적하여 U자형 곡선을 띠는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1929년 대공황과 두드러진 유사점은 실물 방면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전체소득의 20%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배경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받기 시작함.
- OECD 또한 지난 해 11월 보고서('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를 통해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 최근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분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상위 1% 소득비중을 추정하려고 하는 연구배경과 시도는 평가할 만 함.

1) 중앙일보(4/23), '대한민국 상위1%', SBS 8시뉴스, '부의 쏠림 세계2위, 상위1% 평균소득은'

## 2)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몇 가지 방법론적 이슈

- 기획재정부는 “동 연구는 소득의 기준, 측정방식 등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상위1% 소득의 과대추정 등 문제가” 있다는 2쪽짜리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함.
-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상위1%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되었다고 주장함.

### ① ‘총소득’에 관한 정의 문제

- 조세연구원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함.

#### \* 근로소득 관련 주요 용어

- 총급여액(gross income)=과세대상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과세대상근로소득(taxable income)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2010년 기준 총급여액(401.1조), 과세대상근로소득(396.3조), 비과세소득(4.8조), 근로소득공제(129.7조), 근로소득금액(266.6조)

- 통상 국제적 비교를 위한 소득 데이터는 소득공제 이전의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OECD나 Piketty&Saez의 연구에서도 총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에 따라 공제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세제변화에 따른 데이터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임.
- 따라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차감 규모는 크지만, 소득대비 차감 비율이 작기 때문에 상위1%의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박은 타당함.
- 근로소득공제액은 130조로서 종합소득 총액 100조보다 많은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아래에서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급여총계를 기준으로 상위 1% 소득비중을 추정함.

### ② 근로소득세 납부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중복계산 문제

-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는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도 있으므로 근로소득세 납부자이며 동시에 종합소득세 납부자”이므로 이들을 단순합산하면 상위1%의 소득비중이 과다계상 된다고 주장.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근로자는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반박은 타당함.
- 그러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위1% 소득비중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은 자료를 지니고 있는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님.
- 원자료를 통해 중복 계산된 인원을 차감하여 정확한 상위1% 소득비중을 산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자료 없는 일반 연구자가 중복 계산된 인원을 정확하게 차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를 모두 배제하여 대략적인 소득비중을 추정함.<sup>2)</sup>

[표1] 소득 구간별 종합소득\_근로소득 인원 및 소득

(단위: 천명, 십억원, %)

소득 구간	종합소득 인원	근로소득	과세대상근 로소득 인원	근로소득	급여총계	차감 후 인원	차감 후 급여총계
1억~2억	44,265	3,898,048 (0.88)	245,795	26,521,303 (1.08)	30,787,715 (1.25)	201,530	25,191,2 50
2억~3억	10,303	1,357,056 (1.31)	19,962	4,357,761 (2.18)	4,785,722 (2.4)	9,659	2,318,16 0
3억~5억	7,094	1,307,524 (1.84)	8,863	3,075,625 (3.47)	3,314,637 (3.74)	1,769	666,606
5억 초과	7,325	3,878,342 (5.3)	5,022	4,760,307 (9.48)	5,042,516 (10.0)	0	0

\* ( )는 1인당 소득, 단위 억원

-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5억 초과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평균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근로소득금액보다 4억 이상 많음. 또한 초고소득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에 포함된다는 보장도 없음. 따라서 위의 가정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납부자를 전부 배제하면 상위1% 소득비중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③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의 소득

2)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 신고인원 77.4만 명을 근로소득세 납부자에서 전부 제외하고 계산함.

- 2010년 기준 종합소득 납세대상자 523만 중 27%인 140만 명에 달하는 과세미달자의 소득을 고려해야 함. 종합소득이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으로 자영업자의 이윤과 노동소득을 포괄한 개념. 과세미달이라고 해서 140만 명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간주할 수는 없음. 과세미달자의 소득을 99% 평균소득의 10%로 가정하여 상위1% 소득비중을 추가로 계산함.<sup>3)</sup>

#### ④ 초고소득층 소득 누락

- 조세회피를 위한 초고소득층의 소득 과소보고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함. 예를 들어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성형외과, 룬살롱 등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 150곳을 조사해 세금을 모두 1002억 원을 추징하였음.  
- 고소득 전문직과 임대사업자의 탈세 목적의 소득 과소보고 문제를 고려하면 상위 1% 소득비중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됨.

#### ⑤ 비공식노동자의 소득 추정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납세인원을 모두 포함하면 2010년 2040만 명에 달함. 중복인원을 차감하면 1970만 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2383만 명에 비해 410만 명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들 대부분은 무급가족종사자, 노점상 등 생계형 자영업자, 일용직 등 비공식 노동자로 추정됨. 이 계층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상위1% 소득비중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과소추정 됨.<sup>4)</sup>

#### ⑥ 조세연구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에서 오류

- 2010년 기준, 1514만 명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과세대상자는 924만, 과세미달자는 39%인 590만에 달함. 그러나 조세연구원은 전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미달자<sup>5)</sup>의 근로소득인 17.5조를 제외한 실수를 범함.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3)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종합소득 납세자 하위10%의 평균소득은 전체 납세자 평균소득의 3.3%, 하위20%의 평균소득도 7.8%에 불과함. 과세미달자의 소득을 납세자 평균소득의 10%로 가정하였으나, 여전히 임의적이므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함.

4) Piketty&Saez(2003)는 소득 미신고자의 소득을 납세자 평균소득의 20%로 감안하여 조정.

5)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tax base)을 계산함. 따라서 과세미달자도 근로소득금액이 존재함.

계산에서 실수만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조세연구원 (표 3-3)은 수정되어야 함.

[표2] 조세연구원의 오류를 수정한 자료

(단위: 천명, 십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소득세 +	총납세인원	17,175	18,290	21,273 (19,273)	19,266	20,407
	근로소득세	231,956 (243,588)	267,870 (278,445)	291,843 (306,310)	311,160 (330,092)	349,325 (366,876)
1억 초과 구간 합계	납세인원	180	212	236	250	318
	소득금액 합계	38,479	48,000	52,774	55,485	68,982
1억 초과구간 비중	납세인원	1.0	1.2	1.1 (1.22)	1.3	1.6
	소득금액 합계	16.6 (15.8)	17.9 (17.2)	18.1 (17.2)	17.8 (16.8)	19.7 (18.8)

- 수정된 수치를 파레토 보간법을 통해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14.5%, 상위 0.1%는 5.9%에 달함.

## 2. 2010년 상위1% 소득비중, 11.2%

### 1) 상위1%, 종합소득의 1/4인 27%, 상위0.1%는 11%를 차지함

- 조세연구원 자료는 납세인원 비중과 소득비중을 비교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예를 들어 2006년과 2010년의 경우, 1%의 15.8%와 1.6%의 18.8%를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아래에서는 소득상위 계층의 파레토 분포를 가정하고 파레토 보간법 (Pareto interpolation)을 통해 구간단위로 표시된 소득신고 자료로부터 상위1%, 상위0.1%의 소득비중과 평균소득을 계산함.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조사 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정

함. 2004년 이전 자료에는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자의 총소득이나 근로소득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표3] 종합소득세 상위1%, 0.1% 소득비중 및 평균소득

(단위: 천명, 십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납세대상자	4,580	4,913	5,227	4,971	5,230
총 납세자	2,736 [59.7]	3,074 [62.6]	3,584 [68.6]	3,571 [71.8]	3,785 [72.4]
총 소득금액	65,001	77,124	85,082	90,225	100,267
1% 소득 비중	28.28 (26.61)	28.36 (26.86)	27.54 (26.44)	26.09 (25.13)	26.87 (25.91)
0.1% 소득 비중			11.73% (10.82)	10.77% (10.01)	11.26% (10.49)
1% 평균소득	4.01억	4.45	4.48	4.73	5.15
0.1% 평균소득			19.08	19.56	21.59
99% 평균소득	1028만	1136만	1191만	1355만	1416만
1%/99%	39배	39.2배	37.6배	34.9배	36.4배
전체 소득 증가 중 1% 차지 비율	21.8%	28.8%	19.6%	2.1%	33.9%

\* [ ]는 납세자 비율, ( )는 과세미달자의 소득을 감안한 소득비중.<sup>6)</sup>

2006~7년 10억 초과 구간이 누락되어 상위0.1% 소득비중을 추정하기 곤란함.

- 2010년 종합소득 납세자 중 상위1%는 종합소득의 26.9%를 차지하고,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5.15억에 달함. 또한 상위0.1%는 종합소득의 5.2%를 차지하고,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21.6억에 달함.
- 이에 비해 하위99%의 평균소득은 1416만원으로 상위1% 평균소득은 하위1% 평균소득의 36.4배에 달함.
- 2010년 전체 소득증가분의 34%를 상위1%가 차지함. 소득증가의 1/3를 상위1%가 차지하기 때문에 실물경기 호전을 하위99%는 체감하지 못함.

6) 2006년 40%에서 2010년 27.6%로 과세미달자 비율이 크게 하락함. 종합소득에는 과세미달자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미달자 비율이 줄어들수록 상위1% 소득비중이 줄어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의 소득을 포함한 수치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금융소득 감소로 상위1%의 소득비중은 하락하였지만, 2010년 다시 상승하였음. 이는 통계청의 지니계수 추세와도 유사함.
- 상위1%가 종합소득의 1/4인 25% 이상을 차지하고, 상위0.1%가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종합소득의 상위계층 편중현상은 심각함.

2) 상위1%, 근로소득의 7.5%, 상위0.1%는 2.2%를 차지함

[표4] 근로소득세 상위1%, 0.1% 소득비중 및 평균소득

(단위: 천명, 십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납세대상자	12,595	13,376	14,045	14,295	15,177
총 근로소득 (Gross income)	317,872	336,480	361,879	369,571	401,086
1% 소득 비중	6.61	7.22	7.21	7.19	7.51
0.1% 소득 비중	1.85	2.20	2.14	2.12	2.18
1% 평균소득	1.67억	1.82억	1.86억	1.86억	1.99억
0.1% 평균소득	4.66억	5.56억	5.52억	5.48억	5.76억
99% 평균소득	2381만	2357만	2415만	2424만	2469만
1%/99%	7.01배	7.71배	7.69배	7.67배	8.04배
전체 소득 증가 중 1% 차지 비율		17.7%	7%	6.4%	11.3%

- 위에서 지적한 대로 근로소득자의 데이터는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한 총소득(Gross Wage)데이터를 사용함.
- 2010년 근로소득세 납세자 중 상위1%는 총근로소득의 7.5%를 차지하고, 1인당 평균소득이 2억에 달함. 또한 상위0.1%는 총소득의 2.2%를 차지하고, 1인당 평균소득은 5.8억에 달함.
- 이에 비해 하위99%의 평균소득은 2469만, 상위1% 평균소득은 하위99%의 8배에 달함. 또한 2010년 전체 소득증가분의 11.3%를 상위1%가 차지함.
- 금융위기 이후 종합소득 상위1% 비중은 2007년 정점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소득 상위1% 소득비중은 2007년을 추월함. 상위1% 소득비중은 2006년 대비 0.9%p 증가함.
- 2006년 이후 4년 동안 하위99%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8만원 증가함. 연평

균 22만원 증가한 것으로 월평균 급여로 1.8만원 늘어남.

- 이에 비해 상위1%는 1인당 평균소득이 3200만원 늘었고, 상위0.1%는 1.1억 증가함. 상위1%는 월평균 급여가 270만원, 상위0.1%는 9200만원 증가함.

### 3) 상위1% 전체 소득의 11.2%, 상위0.1%는 4.4%를 차지함.7)

[표5] 상위1%, 0.1% 소득비중 및 평균소득

(단위: 천명, 십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납세대상자	17,175	18,290	19,273	19,266	20,407
총 소득 (Gross Income)	382,873	413,604	446,961	459,796	501,353
1% 소득 비중	10.38% (10.27)	11.24% (11.12)	11.07% (10.98)	10.92% (10.84)	11.18% (11.10)
0.1% 소득 비중	3.88% (3.84)	4.37% (4.33)	4.39% (4.35)	4.20% (4.16)	4.40% (4.37)
1% 평균소득	2.31억	2.54억	2.57억	2.61억	2.75억
0.1% 평균소득	8.66억	9.88억	10.17억	10.03억	10.81억
99% 평균소득	2018만	2028만	2083만	2147만	2204만
1%/99%	11.47배	12.53배	12.32배	12.14배	12.46배
전체 소득 증가분 중 1% 차지 비율		21.9%	9.0%	5.8%	14.0%

\* ( )는 과세미달자의 소득을 감안한 소득비중

-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납세대상을 합산하여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위의 표와 같음.

- 2010년 상위1% 20만 명이 전체소득 500조의 11.2%인 56조를 차지하였고, 1인당 평균소득은 2.75억에 달함.

- 또한 상위0.1%인 2만 명이 전체소득의 4.4%인 22조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소득은 10.8억에 달함.

- 이에 비해 하위99%의 평균소득은 2204만으로 상위1% 평균소득은 하위1% 평균

7)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한정할 경우, 상위1% 소득비중은 10.8%, 상위0.1% 소득비중은 4.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소득의 12.5배에 달함.

- 2006년 이후 4년 동안 하위99%는 1인당 평균소득이 186만원 증가함. 연평균 46만원으로 월평균 3.3만원 증가함.
- 이에 비해 상위1%는 1인당 평균소득이 4400만원 증가하였고, 상위0.1%는 2.15억 원 증가함.

#### 4) 중복인원을 제외한 상위1% 소득비중 1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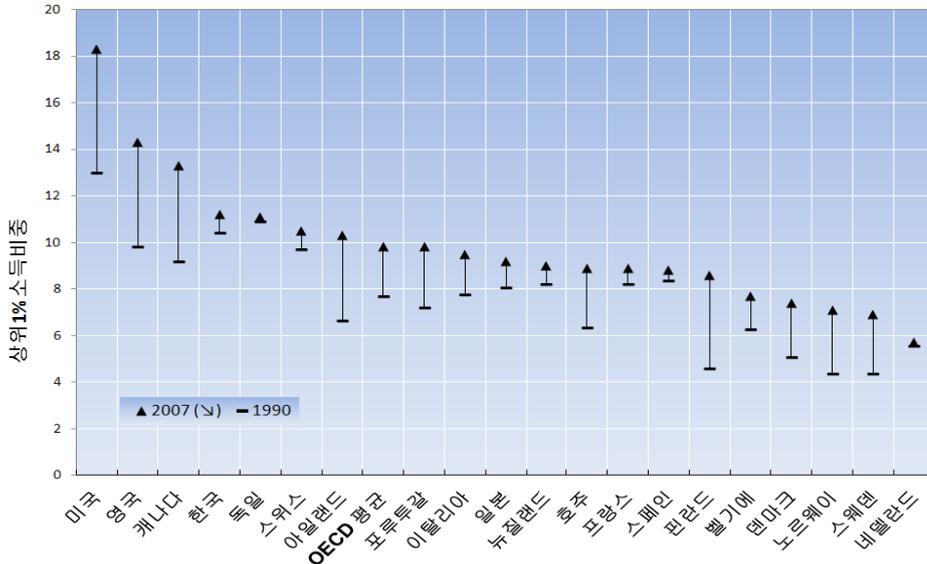
- 중복계산을 고려하지 않은 상위1% 소득비중과 0.1% 소득비중은 각각 11.17%, 4.4%로 나타났음.
- 중복인원 77만 명을 제외한 소득과 인원을 기준으로 상위1% 소득비중을 다시 계산하면, 2010년 상위1% 소득비중은 10.73%, 상위0.1% 소득비중은 3.98%로 0.4~0.44%p 감소함.
- 5억 초과 초고소득 근로소득자 4433명과 3~5억 근로소득자의 95%인 7094명을 모두 제외한 계산에서도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즉 중복계산이나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의 소득 문제 등은 상위1% 소득비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국세청 자료를 기초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11.2%로 추정할 수 있음.<sup>8)</sup>

### 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

#### 1) 세전지니계수 OECD 앞에서 1등, 상위1% 소득비중 OECD 뒤에서 4등

- OECD 보고서(2011)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조사대상 19개국의 상위1% 소득비중 평균은 9.4%로 나타남. 미국이 18.3%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가 5.7%로 가장 낮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위1% 소득비중은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높음. 이에 비해 프랑스 등 대륙유럽은 8~10%, 북유럽 복지국가는 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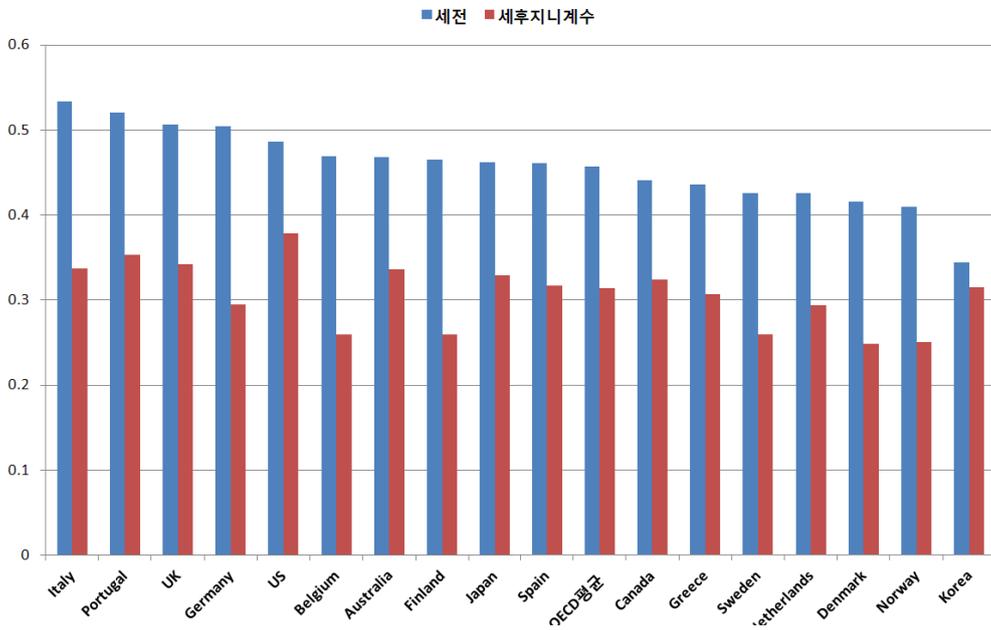
8) 비공식 근로자 400여 만 명의 소득을 평균소득의 20%로 가정하여 상위1% 소득비중을 다시 계산하면 0.4%p 늘어남.



\* 인용: OECD(2011), 한국은 2006년과 2010년.

- 상위0.1% 소득비중은 Atkinson(2011)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8%에 육박하고 영국과 캐나다는 5%, 북유럽 복지국가는 2% 수준으로 낮은 편.<sup>9)</sup>
- 우리나라의 상위1%와 상위0.1% 소득비중은 독일과 매우 유사함. 독일은 2005년이 비율이 각각 11.1%, 4.4%.
- 독일의 경우 세전지니계수는 0.504로 OECD 평균(0.457)보다 높지만, 세후지니계수는 0.295로 OECD 평균(0.314)보다 낮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전지니계수는 0.344로 OECD에서 가장 양호함, OECD 평균(0.457)보다 0.113 낮지만, 상위1% 소득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음. 우리나라와 상위1% 소득비중이 유사한 독일의 세전지니계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음.
- 상위1% 소득비중과 세전 지니계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상위1% 소득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세전지니계수가 OECD에서 가장 양호하다는 통계청 지니계수 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움. 상위1% 소득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과소추정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독일의 세후지니계수가 0.295로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양극화 해소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9) Atkinson 등(2011), 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



\* 자료: OECD

- 독일은 세전\_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44%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8.4%로 OECD 평균 31.3%의 27% 수준에 불과함.
- 상위1% 소득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이 요구됨.
- Piketty&Saez는 최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저세율을 30%로 제한하는 이른바 ‘버핏세’도 상위1% 소득비중의 상승추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sup>10)</sup>
- 이들은 재정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최고세율을 45~70%로 추정함.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회당 올랭드 후보는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75%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발표함. 일본 또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0) 뉴욕타임즈(4/16), For Two Economists, the Buffett Rule Is Just a Start.

[표6] 국가별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단위: %)

	1981	1990	2000	2010
호주	60	47	47	45
캐나다	43	29	29	29
프랑스	60	57	53	40
독일	56	53	51	45
이탈리아	72	50	49	43
일본	75	50	37	40
영국	60	40	40	50
미국	70	28	40	35
한국	62	50	40	38

\* 한국은 작년 말 최고세율을 38%로 상향

- 우리나라는 작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3억 초과 구간에 대해 38%로 인상하였음. 그러나 2010년 기준 과표 3억을 초과한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25,820명, 근로소득세 대상자는 11,895명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0.18%에 불과함.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중복되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납세대상자는 0.13%에 불과함. 최고세율 적용대상의 과표를 인하하고 과표 5억 이상 초고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해야 함.
- 조세연구원이 지적한대로, “상위1% 소득자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 자료의 직접적인 활용”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는 정확한 소득분포의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해, 국세청 소득세 신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통계 등 연구목적의 원자료를 공개하기 바람.

